컨설팅 계약서 (예시)

ABC법무법인(이하 "**갑**"이라 한다)과 인사이저(이하 "**을**"이라 한다)는 신규사업을 위한 컨설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(이하 "본 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 1 조 [목 적]

본 계약은 "을"이 갑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"**갑**"이 "을"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[컨설팅의 범위]

"을"이 "갑"에게 제공할 컨설팅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미지 계약서에서 계약서 주요 내용 추출 및 이슈사항 점검

제 3 조 [계약기간]

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1일까지로 한다. 단,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"**갑**"과 "**을**"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 4 조 [대가의 지급]

본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은 총 일억이천삼백만원(₩123,000,000) (VAT별도)으로 하며 "갑"은 다음의 일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"을"에게 지급한다

- ① 착수금: 프로젝트 착수 후 40,000,000원(VAT별도) 지급
- ② 중도금: 중간보고서 공유 후 40,000,000원(VAT별도) 지급
- ③ 잔금: 최종보고서 공유 후 43,000,000원(VAT별도) 지급

제 5 조 [용역결과물의 소유권]

본 계약상 "을"에 의하여 작성되어 "갑"에게 제공된 컨설팅 용역 결과물 및 모든 관련 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"갑"이 본 계약상의 컨설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과 동시에 "을"로부터 "갑"에게 이전된다.

제 6 조 [정보제공]

- ① "갑"은 "을"이 본 계약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. "을"이 요청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지연하여 용역결과물 제출이 늦어질 경우, 이는 "갑"의 책임으로 한다.
- ② "갑"은 "을"이 파견하는 인원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락하고, "을"이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는데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.

제 7 조 [을의 의무]

- ① "을"은 협의된 컨설팅 용역일정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며, 지연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"갑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"을"은 수행한 컨설팅 용역업무에 관하여 "갑"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, "갑"이 동 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이에 응하여야한다.
- ③ "을"은 컨설팅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2인 1조로 편성한다.

제 8 조 [비밀준수의무]

- ① "갑"과 "을"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이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고객관련정보를 상대 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"갑"과 "을"은 자신의 임직원, 대리인,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제 1항과 동일한 비밀준수 의무를 지도록 한다.

제 9 조 [통지의무]

"갑"과 "을"은 본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는 상호, 대표자, 소재지, 업종 및 기타 계약당사자의 주요사항이 변동되거나 합병, 영업양도, 부도, 화의, 회사정리, 파산 등 신용상태에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[불가항력]

- ① 천재·지변·전쟁·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컨설팅용역이 중단된 때에는 "갑"과 "을"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
제 11 조 [보고서의 제출 및 검사]

- ① "을"은 계약기간 내에 최종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.
- ③ "갑"은 "을"의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0일 내에 검사를 완료하며, 그 기간 내에 "갑"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만료일에 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.

제 12 조 [계약의 변경]

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"갑"과 "을"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,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.

제 13 조 [권리·의무의 승계]

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"**갑**" 또는 "**을**"의 합병, 영업양도, 경영 위임 등의 경우에도 "**갑**" 또는 "**을**"의 합병회사, 영업양수인,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

되며, "갑" 또는 "을"은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.

제 14 조 [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]

"갑"과 "을"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·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·증여·대물변제·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 15 조 [해지]

- ① "갑" 또는 "을"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
 - 2.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, 화의, 회사정리, 파산 등의 개시로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
 - 3.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"갑"과 "을"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 16 조 [계약의 유보사항]

-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"갑"과 "을"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,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.

제 17 조 [관할법원]

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.

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, "**갑"**과 **"을"**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. 8. 30.

갑

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99번지 ABC법무법인 대표이사 홍 길 동 (인) 을

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61 인사이저 대표이사 양 승 호 (인)